

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
자유무역협정

대한민국(한국) 정부와 칠레공화국(칠레) 정부(이하 “당사국”이라 한다)는,

양국간의 특별한 우호와 협력의 유대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,

자유무역협정이 각 당사국에 상호이익을 주며,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서 구체화된 다자무역체제하에서 세계무역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공유하고,

세계무역기구협정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그 밖의 다자, 지역 및 양자 협력체에 따른 각국의 권리와 의무를 기반으로 하며,

명확하고 호혜적인 무역규범을 확립하고, 무역 및 투자 장벽을 피함으로써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증진시킬 것을 결의하며,

이 협정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,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, 환경보호 및 발전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도록 이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,

그들 국가에서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약속하며, 그리고

그들 국가에서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을 강화하여 나가기를 희망하여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부 총 칙

제 1 장 최초조항

제1.1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

이 협정의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관세및무역에 관한일반협정(“GATT”) 제24조와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(“GATS”)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.

제1.2조 목적

1. 이 협정의 목적은 내국민대우, 최혜국대우 및 투명성을 포함한 협정의 원칙과 규칙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되어 있는 바와 같이,
 - 가. 양 당사국간 상호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를 장려하고,
 - 나. 양 당사국 영역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양 당사국 영역간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촉진하고,
 - 다. 자유무역지대에서 공정경쟁의 조건을 창달하며,
 - 라. 양 당사국 영역간 투자기회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고,
 - 마. 각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와 시행을 제공하고,
 - 바.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, 공동운영과 분쟁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며, 그리고
 - 사. 이 협정의 이익을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심화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.

2. 양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국제법의 적용가능한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.

제1.3조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

1.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국제협정 하에서의 서로에 대한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.

2. 이 협정과 제1항의 다른 협정이 상호 배치되는 경우 이 협정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상호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 우선한다.

제1.4조 후속 조약 또는 국제협정

이 협정에서의 다른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대한 언급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후속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.

제1.5조 의무의 범위

양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장한다.